

한국바이오협회

TEL (031)628-0026 FAX (031)628-0054 Homepage(<http://www.koreabio.org>)
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(삼평동)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(담당 : 김종민, jmkim@koreabio.org)

문서번호 한바협 제25-008호

일 자 2025. 1. 6

수 신 생물작용제 및 독소 보유기관

참 조

제 목 생화학무기금지법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보유현황 보고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「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(약칭 : 생화학무기금지법) 제13조의2, 시행령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생물작용제 및 독소(이하 생물작용제등)의 보유자는 보유신고를 해야 하며, 이들 보유신고자는 매년 보유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.

3. 또한, 우리 협회는 같은 법 제23조,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접수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보유신고서 접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4. 상기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2024년 12월말 기준 생물작용제등의 보유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, 아래와 같이 '생물작용제 및 통합관리시스템'에 입력하고 반드시 귀 기관의 보유현황 제출 공문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보고방법 :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(www.batims.or.kr) 온라인 보고
 - 신고메뉴 : 보유신고관리 → 보유현황보고 → 신규 보유현황보고 클릭 후 작성
 - <붙임> 양식의 내용을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
 - 제출 공문은 '제출 공문 업로드'에 첨부(여러 파일 첨부 가능)

- 아이디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관리자 승인 후 로그인 가능
 - ※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 후 담당자 정보 변경 후 보고
- 생물작용제등을 전량폐기한 경우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장부 등 증빙자료를 “기타 첨부자료”에 첨부

2. 보고기간 : 2025. 1. 6(월)~1. 24(금)까지

3. 문의처

- 한국바이오협회 생물보안센터
 - 전 화 : 031-628-0026
 - 이메일 : bwc@koreabio.org

4. 참고사항

-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불이행(미신고/허위신고)시 벌칙
 - 벌칙 :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
 - 근거 : 생화학무기금지법 제28조(벌칙) 제5호
- 생화학무기금지법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한 정보는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 (www.bwckorea.or.kr) 참고

※ 붙임 : 2024년 12월말 기준 생물작용제 및 독소 보유현황 입력 양식 1부.

-끝-

한국바이오협회 회장

